

<p>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·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.</p> <p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사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한수정안</p> <p>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사용료등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</p> <p>조례안 제2조제1항 별표 중 비고란의 “1일 3시간”을 “1일 3시간 이내”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사용료등징수조례안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조례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에 의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(이하 “여성발전센터”라 한다)의 사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사용료등) ① 여성발전센터의 사용료등은 별표와 같다.</p> <p>② 제1항의 사용료등은 선납함을 원칙으로 하되,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후납 또는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제3조(사용료등 면제) 기술교육의 수강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강료, 보육료를 면제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.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.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4. 7등급이하의 모자가정 5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<p>제4조(사용료등 반환) 이미 납부한 사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제5조(손해배상) 여성발전센터의 이용자가 당해시설의 장(이하 “소장”이라 한다)의 허가 없이 그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</p> <p>제6조(사용료 등의 징수납입) ① 소장은 사</p>	<p>용료등을 징수할 때에는 소정의 징수결의를 거친 후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소장은 매월 5일까지 전월분의 수입징수보고서에 시금고가 발행하는 수익금월중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(다른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사용료징수조례 [별표]의 구분란중 보육료, 기술교육 수강료, 생활문화 수강료란과 사용요율란중 부녀복지관란은 이를 삭제한다.</p> <p>[별표] 여성발전센터의 사용료등(제2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 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단 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용료등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술교육 수 강 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인 1월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,000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· 1일 3시간이내 · 주5일 기준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생활문화 수 강 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인 1월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,000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· 1일 3시간이내 · 주1일 기준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육 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인 1월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,000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· 주5일 기준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1조제2항중 “정신병원”을 “은평병원”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·복권판매대,매점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·복권판매대,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부칙 중 제2항(경과조치)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p>	구 분	단 위	사용료등	비 고	기술교육 수 강 료	1인 1월	7,000원	· 1일 3시간이내 · 주5일 기준	생활문화 수 강 료	1인 1월	7,000원	· 1일 3시간이내 · 주1일 기준	보 육 료	1인 1월	5,000원	· 주5일 기준
구 분	단 위	사용료등	비 고														
기술교육 수 강 료	1인 1월	7,000원	· 1일 3시간이내 · 주5일 기준														
생활문화 수 강 료	1인 1월	7,000원	· 1일 3시간이내 · 주1일 기준														
보 육 료	1인 1월	5,000원	· 주5일 기준														

②(경과조치) 이미 계약된 신문판매대 등의 경우는 그 효력을 계속 인정한다.

부 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 1]·[별표 2] 및 [별표 7]을 다음과 (별지와) 같이 하고,

[별표 1]의 초등학교(북부)중 “서울용원초등학교”란 다음에 “서울자운초등학교”란을, 초등학교(강서) 중 “서울목원초등학교”란 다음에 “서울염동초등학교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초등학교(북부)

번호	명 칭	위 치
52	서울자운초등학교	도봉구 창동 181-7

초등학교(강서)

번호	명 칭	위 치
57	서울염동초등학교	강서구 염창동 45-15

유치원(남부)

번호	명 칭	위 치
5	서울도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	영등포구 대림3동 741-3

유치원(북부)

번호	명 칭	위 치
4	서울신상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	노원구 상계동 86-1

유치원(중부)

번호	명 칭	위 치
7	서울남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	용산구 원효로2가 54

유치원(강남)

번호	명 칭	위 치
3	서울개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	강남구 개포동 188
4	서울방배초등학교병설유치원	서초구 방배동 861-1

유치원(동작)

번호	명 칭	위 치
6	서울청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	관악구 봉천동 산 175-3

[별표 2]의 중학교(강동)중 “서울체육중학교”란을 삭제한다.

[별표 3]의 고등학교 중 “한강전자공업고등학교”란 다음에 “둔촌고등학교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번호	명 칭	위 치
75	둔촌고등학교	강동구 둔촌동 79-3

[별표 7]의 유치원(남부)중 “서울두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”란 다음에 “서울도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”란을, 유치원(북부)중 “서울창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”란 다음에 “서울신상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”란을, 유치원(중부)중 “서울송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”란 다음에 “서울남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”란을, 유치원(강남)중 “서울서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”란 다음에 “서울개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” 및 “서울방배초등학교병설유치원”란을, 유치원(동작)중 “서울난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”란 다음에 “서울청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”란을, 유치원(성동)중 “서울옥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”란 다음에 “서울신자초등학교병설유치원” 및 “서울구의초등학교병설유치원”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.